

## 산 학 협 력 약 정 서

한국기술교육대학교(이하 한기대)와 \_\_\_\_\_는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의 공동 발전과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약정은 한기대와 \_\_\_\_\_간 인재양성, 기술교류, 연구개발, 기업탐방, 현장실습, 기업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①설비지원: 양 기관은 상호 협의 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시설(강의실, 실습실 및 실험실습 장비, 지원시설 등)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현장실습 : 한기대의 재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어 상호 협의 후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③교류협력 : 양 기관은 국책사업참여(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등)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목적물의 달성 및 성과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
- ④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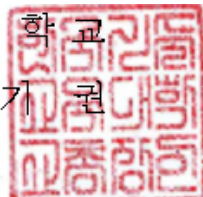
제3조(협약의 이행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합의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, 필요한 경우 세부 이행에 필요한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유효기간)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,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이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 
총 장 이 기 권



(인)